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1조의 요약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납부세액(적법신고에 대해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의 징수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일부 및 전부)의 징수기한 : 직전년 기준 50% 내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가결산방식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소득지급시 세법의무의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시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본래의 원천징수세액(본세)을 함께 지체없이 징수함(원천징수 안하였는데 이미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본세는 놔두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 징수함).
-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관련 과오납세액(기납부액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초과분)은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이 아니면 다른 국세(세목이 법인세가 아니어도 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함.

● 제71조 【징수 및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의 징수

1. 본 조의 개요

본 조는 정부가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과 본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세액을 징수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한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본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초과하면 환급되어야 하며, 아니면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2. 본신고납부 법인세의 징수 (법 제71조제1항)

①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미납부액 징수

법인은 본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세액을 당해 과세표준의 적법신고기한내에 본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일부나 전부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이 직접 징수하게 되는데, 본 항은 관할세무서 등이 징수시기를 당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지 못한 세액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세액이라면 그후에 언제라도 징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항의 징수시기 규정은 관할세무서 등의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아니고 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에 있어 국세기본법이 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② 신고서상의 세액 완납시

본 법 제60조에 의거 제출한 과세표준세액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신고서상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이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이는 본 항에 따른 징수대상이 아니다. 세액차이가 있다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사항이 된다.

3. 중간예납세액의 징수 (법 제71조제2항)

① 직전년 기준이면 납기경과후 2월 이내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법인세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가 미납된 법인세액을 직접 징수하는데, 중간예납대상법인의 신고납부금액산출 유형별로 그 징수시기가 다르다.

본 법 제63조제1항 본문 규정이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방식(직전년×50% 방식)에 의한 일반적인 중간예납대상법인이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중간예납납부기한인 2개월(12월말 결산법인의 반기가 6월말이면 8월말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그러니까 10월말)에 징수한다.

② 당연도 결산 등으로 가결산방식이면 3개월 이내

본 법 제63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거 가결산을 하는 중간예납대상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절차에 따른 납부기한 지난 날(중간예납 가결산기말부터 2개월)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말 법인으로 6월말이 중간결산일이고, 8월말이 가결산기한이므로 11월말임)에 징수하여야 한다. 물론 3개월 이후에도 징수할 수 있는데 3개월 이내라는 의미는 과세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II. 원천징수세액의 관할세무서 징수 (법 제71조제3항)

① 미납부원천징수세액과 불이행가산세의 징수

본 법 제73조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미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였어야 할 본래 세액상당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즉, 본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도 본래의 원천징수세액과 합하여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반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어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중복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징수한다.

② 신고납부된 경우의 원천징수본세 부정수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으나 당해 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은 납세의무자인 다른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과세(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납부종결)되었다면 원천징수 이전에 당해 수익에 대한 국세는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징수함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없애기 위하여 원천징수할 본세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배제하고 원천징수불이행 관련 가산세만 징수한다.

중전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를 가산징수하여 이중납부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환급받거나 일단 징수된 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

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있었으나 본 항의 단서규정으로 이를 없앤 것이다.

III. 과오납세액의 환급과 타세금 증당 (법 제71조제4항)

1. 정부의 과오납세액 원부·증당

1) 과오납세액의 원부·증당사유

앞에서의 설명은 법인이 미달하여 납부하거나 미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이지만 과오납세액의 환부 및 증당은 이의 반대경우이다.

본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나 경정의 결과는 주로 과세권자 입장에서 징수할 세액이 있어 징수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반대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거한 다른 미납국세(세목이 달라도 됨) 등에 증당하고 증당할 금액이 없으면 환급한다.

2) 결정과 경정의 원부절차

① 정부의 결정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법인이 기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이나 원천징수한 법인세액합계액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총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국세 등에 증당하고 증당하고도 남는 잔액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산할 법인세액에는 가산세액이 포함되며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등으로 인하여 이미 가산된 가산세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환급의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되는 못하지만, 기타의 환급의 경우에는 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데 경정이나 재경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납부된 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총계를 초과하여 차감고지세액이 부수(-)인 경우라면 충당되거나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거나 재경정하는 경우 세액의 공제부족액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징수할 법인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자진신고의 인정과 미완급 사유

법인의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이 실수·오류·허위나 착오 등의 사유로 과대하게 계상될 때, 법인의 신고내용을 서면 검토하여도 객관적인 하자가 없다면 신고서류만으로 관할세무서가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하여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된 법인을 조사한 결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액을 환급한다.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를 한다면 예외로서 세액이 환급될 수 있다.